

#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에 즐음하여

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의 달입니다!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!

## 설치목적

-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
-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, 효과성, 민주성, 투명성을 제고하고
-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.

##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

- 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
- 학교운영 참여권, 중요사항 심의·자문권, 보고요구권, 시정명령 신청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, 회의참여 의무,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
## 위원선출 및 임기
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, 우리 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입니다.
- 위원의 임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(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)으로 하며,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고, 지역위원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도 위원선출은 결원이 발생한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위원 1명 보궐 선출 예정 (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은 3월 18일, 교원위원 보궐 선출은 3월 17일 예정)

## 위원의 자격 및 겸직제한

- 자격
  - 학부모위원: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  - 지역 위원: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,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,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
- 자격 및 겸직제한
 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
  -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.

## 당선자 결정방법

- 투표 당선
  -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
- 무투표 당선
  -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. (무투표 당선일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통지서 교부)

☞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간사(송윤기) ☎323-0279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